



제320회 임시회

2013.05.08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3년 04월 26일

○ 회부일자 : 2013년 05월 01일

3. 제안이유

학교규칙 제정에 따른 지도·감독 기관의 인가 절차 폐지(초·중등교육법 개정, 2012.03.21.)와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의 지방직 교육공무원 전환(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, 2013.06.12.)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교육장 위임 사항 중 “관할학교의 학칙 제정·변경 인가(단, 사립 초·중학교의 학칙 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)”를 삭제함(안 제5조제14호)

나. 교육장 위임 사항으로 “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부서 지정”을 신설함(안 제5조제30호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2012. 3. 2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으로 “관할 학교의 학칙 제정·변경·인가” 사항은 ‘교육감의 지도를 받아 학교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’에서 ‘교육감의 지도 권한’이 삭제됨으로써 본 조례 제5조제14호의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,
- 2013. 3. 23. 개정된 「교육공무원법」 및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개정으로 현재 국가직인 교육전문직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‘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부서 지정’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

관계법령 발췌

□ 교육공무원법 [시행 2013.6.12.][법률 제11527호, 2012.12.11.]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"교육공무원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
2.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
3. 교육기관,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

② 이 법에서 "교육전문직원"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.

③ 이 법에서 "교육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
2.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
3.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 연수기관

④ 이 법에서 "교육행정기관"이란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.

⑤ 이 법에서 "교육연구기관"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·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.

⑥ 이 법에서 "임용"이란 신규채용, 승진, 승급, 전직(轉職), 전보(轉補), 겸임, 파견, 강임(降任), 휴직, 직위해제, 정직(停職), 복직, 면직,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.

⑦ 이 법에서 "직위"란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.

⑧ 이 법에서 "전직"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.

⑨ 이 법에서 "전보"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.

⑩ 이 법에서 "강임"이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.

⑪ 이 법에서 "복직"이란 휴직,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.

제58조(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)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.

제60조(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 등) 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국립·공립 학교의 교원 간에는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을 거쳐 상호 전직할 수 있다.

②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.

제61조(「지방공무원법」과의 관계) ①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0조의2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"심사위원회"는 "교원소청심사위원회"로 본다.

②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1조제1항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본문 중 "제63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4호·제5호,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"는 "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4호부터 제7호까지·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"으로 보고, 같은 항 단서 중 "제63조제2항제4호"는 "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제1항제7호"로 본다.

③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제9조의2, 제10조, 제10조의2, 제10조의3, 제11조, 제22조, 제22조의2, 제23조, 제24조, 제29조의2, 제29조의4, 제29조의5, 제30조, 제32조, 제34조, 제34조의2,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, 제39조, 제39조의2,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4조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

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3의2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5항제4호, 제5호, 제7호,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의2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9조의2제5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
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58조의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교원 중 법 제9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

6.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6조 및 제6조의2, 제7조의 교사와 수석교사 또는 교장·교감·원장·원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법 제58조의 교육전문직원 중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

7.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29조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제39조의 장학사·교육연구사와 법 제58조의 교육전문직원간 상호 임용하는 경우

제14조제2항 중 “교육전문직”을 “교육전문직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□ 초·중등교육법 [시행 2012.3.21.][법률 제11384호, 2012.3.21.]

제8조(학교 규칙) ① 학교의 장(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)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.

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·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정부조직법 [시행 2013.3.23.][법률 제11690호, 2013.3.23.]

제6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.

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.

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[시행 2013.7.6.][법률 제11724호, 2013.4.5.]

제26조(사무의 위임·위탁 등)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·출장소 또는 읍·면·동(특별시·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·출장소 또는 읍·면·동의 장을 지휘·감독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